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2.06.17

3. 정정사유

- ① 정기갱신
- ②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(1등급→2등급)
- ③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<집합투자규약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 | 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추가>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| 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<p>제8조(신탁금의 납입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| <p>제8조(신탁금의 납입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| 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</p> | 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반영 |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 |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<p>제14조(수익자명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4조(수익자명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반영 | 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·처</p> | 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|--|---|
| | <p>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<신설></p> | <p>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•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, 자산배분명세, 취득•처분 등의 결과,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.</p> |
| 오기 정정 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반영 | <p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p> <p>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p> <p>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
| 자본시장법 | 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| 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시행령 반영 |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,</p> <p>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. 법 제88조제1항•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5~7. <신설> |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,</p> <p>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. 법 제88조제1항•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.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|
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모두 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모두 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26조(환매업무) 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| 제26조(환매업무) 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9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10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27조(환매가격)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 제27조(환매가격)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오기 정정 | 제28조(환매연기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 전의 날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전의 날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| 제28조(환매연기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의 날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의 날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•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•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| 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•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•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 | 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 | 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 |

| | | |
|--|--|---|
| 영 | 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| 성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<p>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 영 | 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 <p>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| 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 <p>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, 오기 정정 | <p>제39조(보수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| <p>제39조(보수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, 오기 정정 | 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</p> | 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</p> |

| | | |
|--|--|---|
| | <p>사유 <추가></p> <p>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| <p>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|
|--|--|---|

<투자설명서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|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 |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|
|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 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|
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2부. 8.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동일종목투자 ○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| 제2부. 8.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동일종목투자 ○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<p>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加入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<추가></p> | <p>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加入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p> |
| 결산에 따른 환해지 비용 변경 | <p>제2부. 9. 나. 위험관리 환해지 비용: 20,119,200</p> | <p>제2부. 9. 나. 위험관리 환해지 비용: 10,763,500</p> |
|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| <p>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25.60%입니다. 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,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첫번째로 높은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매우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 미국 주식 및 채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특히 바이오 테크놀러지 관련 섹터 및 업종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.</p> | <p>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24.83%입니다. 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,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두번째로 높은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 미국 주식 및 채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특히 바이오 테크놀러지 관련 섹터 및 업종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.</p> |
| 기업공시서 | 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| 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식기준 반영 | <추가> | 2)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<추가> | 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차.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 여부 확인 |
| 채권평가회사 사 사명 변경 | 제4부.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채권평가 | 제4부.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자산평가 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제5부. 3. 나.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추가> | 제5부. 3. 나.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.) |

<간이투자설명서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 |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